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8
----------	-------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유은혜 · 이동섭 · 안규백
박 정 · 손혜원 · 인재근
안민석 · 오영훈 · 김민기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학 중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이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9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교의 석면해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
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6항, 제67조의2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4.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46조”를 “제38조의5제1항, 제46조”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 ⑤ (생략) ⑥ <u>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u>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u> 3. <u>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u> 4. <u>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신 설></u>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u>제46조</u>,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생 략)	<u>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u> 제67조의2(벌칙) ----- ----- ----- ----- -. 1. ----- ----- -----<u>제3</u> <u>8조의5제1항, 제46조</u>----- ----- ----- 2. (현행과 같음)
---	--